

임실군의회 제334회 임시회에서 심의·의결된 「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」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4년 2월 16일

임실군의회 의장



임실군의회 조례 제7호

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본문 중 “전라북도”를 “전북특별자치도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전라북도의회”를 “전북특별자치도의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